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호 전단 중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에”를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이 속한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에”로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나목 본문 중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로 한다.

제19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대지 안에서의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토지에서”를 “토지 또는 2000년 7월 1일 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토지에서”로 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가)③ 전단 중 “설치하는”을 “설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이 설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4)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설치하는 공판장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 ① 시·군·구당 1개소로 한정하되, 해당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공판장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 ②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별표 1 제5호마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배관 시설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 및 그 배관시설을 말한다.
-----------------------------	--

별표 2 제2호나목1)·2)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1)부터 11)까지 외의 부분 다)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을

제27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강기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수성

제28조(「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공용쌀 재배가 가능한 일단(一團)의 토지일 것

제29조(「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중 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3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항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와 전국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별표 2 제1호의 차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 또는 단축 가능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늘리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차령 기준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2 제1호 중 승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전기자동차)	6년

별표 2 제1호 비고 중 “시·도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을 “시·도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차령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본문 중 “제1호에 따른 차령”을 “제1호에 따른 차령(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차령을 말하고, 제1호 비고에 따라 2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1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2조(「인삼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제33조(「전파법 시행령」의 개정)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2 단서 중 “3년”을 “3년(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3호 전단 중 “제45조제6항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제45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사증명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발급받은 날”을 “발급받은 날의 전날”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다시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해당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및 제67조제2호 중 “제45조제3항”을 각각 “제45조제4항”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2호·제3호”를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제2호·제3호”로, “제45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을 “제45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34조(「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가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을 “지하구,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 중 “축사는”을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 및 (나)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3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가설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 신고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1까지,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 이후 공고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점용료·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를 출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적격혈액으로 확인된 혈액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혈액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폐기처분되지 아니한 부적격혈액에 대해서도 적용한다.